

하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「하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하동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. 7. 8.

하동군의회의장 강 회 순

1. 조례명: 하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

2. 제안이유

○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동군 기본소득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이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

나.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라.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마. 실태조사 및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(안 제6조, 제7조)

바. 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8조, 제9조)

사.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, 제11조)

아.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
자. 협력체계 구축 및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, 제14조)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4일(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유무와 사유, 수정의견)
- 2)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

나. 의견제출 방법

- 1) 팩스: 055-880-2939
- 2) 하동군의회 홈페이지(<http://www.hdcl.go.kr>) 참여마당(의회에 바란다)
- 3) e-mail: jina927@korea.kr

붙임 1.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
2. 하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1부. 끝.

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: 하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조례안 내용(조항)	찬 성 여 부		의 견	비고
	찬성	반대		

하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하동군의 기본소득 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 및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기본소득”이란 재산·소득·노동활동과 관계없이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에게 개별적·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.
2. “지역화폐”란 「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하동사랑상품권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하동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기본소득 정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.

- 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기본계획 수립 등) ① 군수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하동군 기본소득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

있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.

1. 기본소득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
2. 기본소득의 지급 대상, 지급 금액, 지급 방법
3.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
4.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
5.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,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
제6조(실태조사 등의 실시)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소득 시행 여건, 군민의 제도 인식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(시범사업의 시행)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,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제8조(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) 군수는 기본소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하동군 기본소득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1. 기본소득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
2.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3.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

4. 기본소득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기본소득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

2. 예산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

3. 인구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

4. 지역경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

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1. 하동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

2. 인구, 사회복지, 경제, 농어업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

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위원의 해촉)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의 사직 의사 표시
2. 질병,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
3. 직무상 비밀 누설 또는 품위 손상 등 위원직 수행에 부적절한 경우
4.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

제12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제13조(협력체계 구축) 군수는 기본소득의 원활한 시행과 제도 개선을 위하여 중앙부처, 경상남도, 타 지방자치단체,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4조(개인정보 수집) 군수는 기본소득의 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지급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